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삼류제조업자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 부담 완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6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삼류제조업자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 규정 완화	2
2. 부칙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제출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인삼류제조업자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 규정 완화

현행법은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과 상관없이 20일 이내에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u>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u> ----- ----- ----- ----- -----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u>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u>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u> <u>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u> <u>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u>
※ 관련 조문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⑩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신고 의무 부담 완화를 통하여 보다 유연한 영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

2) KGC인삼공사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함.

나. 검토의견

1) 인삼류제조업자 현황

현행법은 인삼류제조¹⁾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²⁾에게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2023년 인삼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340개소의 인삼류제조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340개소 모두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됨.

1)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23년 전국 인삼류제조업자 현황 >

(단위: 개소)

계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40	2	6	1	1	14	13	15	219	22	4	40	3

※ 주: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제주의 경우 인삼류제조업자가 부재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인삼통계자료집”, 2024. 11.

한편, 인삼류제조업자는 현행법 제17조³⁾에 따라 연근, 품질, 포장 및 표시 등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협경제지주(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인삼류 검사 실적 >

(단위: 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협 인삼검사소	160	134	130	114	105
자체검사기관	327	294	228	262	298
계	487	428	358	376	40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인삼통계자료집”, 2024. 11.

3) 「인삼산업법」

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호)

1. 인삼류 검사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 2023년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검사실적 >

(단위: 톤)

업체	지정삼종 ⁴⁾	검사실적
(주)한국인삼공사	홍삼	195
대금인삼	홍삼, 백삼	8
금산인삼농협	홍삼, 태극삼	5
천오백년홍삼영농조합법인	홍삼, 백삼	5
인삼코리아	홍삼, 태극삼, 백삼	1
인삼월드	홍삼, 백삼	2
(주)유엔아이 금산지점	홍삼, 태극삼	6
강화인삼협동조합	홍삼	1
삼화삼업사	홍삼, 태극삼	6
김포과주인삼농협	홍삼	3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홍삼, 백삼	4
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	홍삼	4
(주)농협홍삼	홍삼	2
전북인삼농협 인삼제조창	홍삼, 백삼	-
우신산업(주)	홍삼, 태극삼, 백삼	6
국보홍삼제조창 영농조합법인	홍삼, 백삼, 흑삼	1.5
(주)삼흥	홍삼	-
(주)동원에프엔비	홍삼	-
한국고려홍삼조합(주)	홍삼, 흑삼	3
영농조합법인 풍기인삼나라	홍삼	-
농업회사법인 (주)한국인삼	홍삼	-
(유)자연의길	홍삼	-
고려인삼 영농조합법인	홍삼	-
대길인삼 영농조합법인	홍삼	-
(주)한국고려인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
풍기중앙인삼 영농조합법인	홍삼, 백삼	-
정농인삼 영농조합법인	홍삼, 백삼	11
포천인삼 영농조합법인	홍삼	-

업체	지정삼종 ⁴⁾	검사실적
풍기인삼협동조합	홍삼, 백삼, 태극삼	16
안성인삼농협	홍삼	0.5
대동고려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11
영농조합법인 순우리인삼	홍삼, 백삼	7
고려홍삼원(주)	홍삼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인삼통계자료집”, 2024. 11.

4)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검토의견

법제처는 2024년 2월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주요 업무로 제시하며, 신고 대상 휴업기간 조정 등의 법령 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⁵⁾

이후 정부는 2024년 12월에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개정안은 그중 하나에 해당함.

< 휴업신고 관련 정비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안의 내용 >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개정안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30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 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2024. 2. 8.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개정안 내용	소관 부처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해양수산부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15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해양경찰청

※ 자료 : 법제처 보도자료,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 12. 10.

현행법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인삼류제조업자가 ①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②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⁶⁾

그런데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업기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바, 다소 짧은 기간을 휴업하는 경우에도 인삼류제조업자가 의무
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
므로, 인삼류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6) 「인삼산업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
삼류제조업자

개정안에 따라 ① 인삼류제조업자가 경미한 사유로 3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② 3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신고 부담이 완화될 것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 제도 변화 >

구분		현행법	→	개정안	비고
신고 대상	휴업신고	휴업하는 인삼류제조업자	→	30일 이상 휴업하는 인삼류제조업자	- 휴업기간 고려 (30일 이상)
	영업재개신고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인삼류제조업자	→	30일 이상 휴업하여 휴업신고를 한 영업을 재개하는 인삼류제조업자	- 휴업신고를 30일 이상 휴업시에만 하므로, - 영업재개신고도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하게 됨
신고 기한	휴업신고	20일 이내	→	30일 이내	- 신고 기한 연장 (현행대비 10일 연장)
	영업재개신고				

※ 자료 :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1. 13.

2.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

2) KGC인삼공사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16개 법률안의 시행일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휴업신고 관련 정비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안의 시행일 >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의안번호	시행일
1	법무사법	법무사업	2206456	공포한 날
2	변호사법	변호사업	2206452	공포한 날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2206454	공포한 날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2206465	공포한 날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2206466	공포한 날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2206468	공포한 날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2206455	공포한 날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2206661	공포 후 3개월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2206662	공포 후 3개월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2206451	공포 후 3개월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2206419	공포한 날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2206421	공포한 날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2206425	공포한 날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업	2206426	공포한 날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2206427	공포한 날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2206428	공포 후 3개월

※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5.

개정안은 대상자인 인삼류제조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변경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안 제12조제3항에 각 호를 신설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제3항에서 제3항제1호로 변화하여 대통령령의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3개월의 준비기간을 두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한편,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휴업한 자의 휴업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라 휴업신고 및 영업 재개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7)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되,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인삼류제조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신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되지 않는 30일 이하 휴업자에게는 개정안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적용례와 같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